

1995년 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심 사 보 고 서

사 천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995. 12.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5. 12. 21 (시장)

나. 회부일자 : 1995. 12. 23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후 원안 회부)

※ 수정안 : 1995. 12. 26 (시장제출 당위원회 회부)

다. 상정일자 : 1995. 12. 26 (제8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상정)

라. 의결일자 : 1995. 12. 27 (제8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의결)

2. 심사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21조 (추가경정예산)의 규정에 의거

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3. 주요내용 (강광원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가. 예산총괄

(천원)

구 분	총 규 모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정예산액	122, 475, 900	98, 128, 981	24, 346, 919
추경예산액	124, 282, 988	100, 103, 610	24, 179, 378
증 감	1, 807, 088	1, 974, 629	△ 167, 541

라. 특별회계 (세출)

(천원)

구 분	계	관 리 비	사 업 비	지방채상환	예 비 비
계	24, 179, 378 (△ 167, 541)	3, 252, 816 (21, 665)	15, 879, 729 (△ 359, 032)	4, 799, 392 (200, 000)	247, 378 (△ 30, 237)
상 수 도 사 업	10, 317, 107	2, 995, 620	6, 634, 901	634, 975	61, 611
하 수 도 사 업	244, 797	50, 442	67, 960	116, 000	10, 395
주 택 사 업	283, 516	982	10, 852	152, 966	118, 716
토지구획정리사업	3, 594, 842		3, 594, 842		
의료보호기금조성	2, 339, 613	11, 000	2, 328, 613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50, 205	1, 470	230, 000		18, 755
새마을 소득금고	217, 811	1, 190	199, 250		17, 371
농공지구조성사업	4, 395, 416	107, 593	361, 822	3, 905, 451	20, 550
중소기업육성기금	317, 000		317, 000		
남강댐 건설	2, 219, 071	84, 519	2, 134, 552		

마. 신규투자사업

(천원)

사 업 명	사 업 비	재 원	비 고
계	436, 696		
양돈단지진입로개설	200, 000	교부세	명시이월
용두마을진입로확포장	150, 000	교부세	명시이월
지역 농업 개발 센터 실시시설및부지매입	70, 696	시비	24, 000원 × 2, 704㎡
사동매립장환스설치	6, 000	시비	40, 000원 × 150 ㎡
대방동 청사 보수	10, 000	시비	

나. 세입 (추경재원)

(천원)

구 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계	124,282,988 (1,807,088)	122,475,900	100,103,610 (1,974,629)	98,128,981	24,179,378 (△167,541)	24,346,919
지 방 세	14,164,634 (636,040)	13,528,594	14,164,634 (636,040)	13,528,594		
세외수입	29,890,709 (496,119)	29,394,590	12,068,511 (234,397)	11,834,114	17,822,198 (261,722)	17,560,476
지방교부세	37,274,000 (896,000)	36,378,000	37,274,000 (896,000)	36,378,000		
지방양여금	7,491,891 (0)	7,491,891	7,491,891 (0)	7,491,891		
보 조 금	30,981,105 (1,925,060)	29,056,045	27,772,925 (2,354,323)	25,418,602	3,208,180 (△429,263)	3,637,443
지 정 재 원	4,480,649 (△2,146,131)	6,626,780	1,331,649 (△2,146,131)	3,477,780	3,149,000 (0)	3,149,000

다. 일반회계 (세출)

(천원)

구 분	추 경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계	100,103,610	98,128,981	1,974,629
의 회 비	943,263	950,543	△ 7,280
일 반 행 정 비	32,077,583	32,305,050	△ 227,467
사 회 복 지 비	13,199,372	13,107,069	92,303
산 업 경 제 비	22,454,265	21,172,702	1,281,563
지 역 개 발 비	24,866,698	24,592,379	274,319
문화및 체육비	4,937,784	3,945,225	992,559
민 방 위 비	413,606	418,623	△ 5,017
자원및기타경비	1,211,039 (예비비 801,371)	1,637,390	△ 426,351

4. 검토보고 요지 (이호래 전문위원)

가. 세입분야

- 지방세 수입에서 636,000천원이 증가했으나 재산세, 자동차세, 과년도 수입에서 크게 감소되고
- 세외수입에서는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크게 감소하고 미자수입에서 다소 증가
- 교부세는 태풍 폐미 복구비 300,000천원이 특별지원되고 보통교부세 596,000천원이 추가지원되었고 보조금은 2,354,323천원이 증가
- 지정재원에서는 지방채 (축동면 청사건립) 300,000천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1,885,528천원이 감소 되었음

나. 세출분야

- 불요한 경상적 경비 삭감액과 추가재원 1,807,088천원으로 신규투자 사업비 436,696천원외에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부족분과 각종 부담금 등 법정 경비에 충당하고
- 일부 경상적 경비는 연도말 결산을 앞두고 긴요한 일부분에만 계상되었음

다. 종합의견

- 금번 추가 경정예산은 시군 통합과 함께 양시군의 살림을 한데 묶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회계연도 마무리를 위한 결산 예산인바
- 더욱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되 원안가결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토론

질 의 및 토 론	답
◦ 한국어린이집 놀이터설치비 13,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놀이터는 이미 설치된것 아닌가? (김봉권 위원)	◦ 94.건립당시 사실상 예산이 모자라 자체 예산으로 놀이터는 설치됐으나 부대시설을 위해 도비가 지원되어 계상하게 됐다(김주일 사회환경국장)

질 의 및 토 론	답
푸른어린이집 증축비 166,32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축에는 지원 한도액이 83,160천원인데 너무 많은것 아닌가? (김봉권 위원)	푸른어린이집 시설이 노후되어 개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신축규모의 국·국도비가 지원되어 시비를 포함하여 예산은 사실상 신축규모로 예산 지원하게 되었다 (김주일 사회환경국장)

6. 의결 : 원안가결 (전원찬성)

(천원)

구 분		총 규 모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추경예산액		124,282,988	100,103,610	24,179,378
조정 심사	감 액			
	증 액			
확 정 액		124,282,988	100,103,610	24,179,378

7. 소수의견

- 반상회 발간 부족분 9,600천원 계상은 집행상 문제가 있었던지 예산편성시 잘 못 났고
- 한국어린이집 놀이터 설치비 13,000천원 중 시비6,500천원과 푸른어린이집 증축 166,320천원 중 시비 54,054천원은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